

環境保全法令

이런 점이 궁금하다 <연재Ⅱ>

이 質疑 · 回信集은

'86년 12월 31일 法津 제3903号로 개정된
 環境保全法の 제분야에 대하여 同法 개정 이후
 '88년 3월 7일까지 環境庁에 관계기관과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된 사항을 庁의 관계부서가 回信한 내용으로
 環境保全法令의 순서에 따라 수록한 것이다.

目 次

5. 排出施設의 變更許可	可能 與否
가. 變更許可對象 與否 判定時 增設比率의 決定基準	
나. 既存施設의 100% 代替時 變更許可對象 該當與否	
다. 許可받은 施設以外의 施設 增設時 變更許可對象 該當 與否	
라. 住居地域에서의 排出施設 變更許可 可能與否	
마. 工業團地管理法上의 工業團地안에서의 排出施設 變更 許可	
바. 建築物의 變更없이 排出施設을 變更하는 境遇 許可	
6. 排出施設의 變更申告	
가. 既 許可받은 施設 一部를 他人에게 讓渡한 境遇 變更許可對象 該當與否	
나. 防止施設안 變更할 境遇의 變更許可對象 該當與否	
다. 한개의 事業場이 둘 以上으로 分割될 境遇 排出施設 設置許可 分割方法과 둘 以上の 事業場이 하나로 統合될 境遇 排出施設 設置許可 統合方法	

5.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가. 變更許可對象 與否 判定時 增設比率 決定 基準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計劃 31602-1544('87.8.25)

回信 :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排出施設 變更許可 對象施設中 가스 · 입자상물

질 및 惡臭排出施設로서 第4項의 熱供給施設外의 施設로 既 許可된 施設보다 10%以上의 增設과 廢水排出施設의 20%以上 增設이라 함은 全體 施設의 比率을 말하는지?

3. 回信內容

가스 · 粒子狀物質 및 惡臭 排出施設中 熱供給 施設外의 施設로서 排出가스량이 50ml/時間以上 또는 既 許可된 施設보다 10%以上 增設이라함은 各 排出施設을 基準으로 한 比率이며, 廢水排

出施設の 境遇에는 單位防止施設別로 이에 속하는 排出施設을 基準으로 한 比率을 말한다.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5 條, 同法 施行規則 第 17 條 및 第 18 條

나. 既存 施設의 100% 代替時 變更許可對象 該當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計劃 31602-1554('87.8.25)

回信 :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既存 排出施設(防止施設 包含)을 같은 規模의 新規施設로 代替時 變更許可對象인지? 變更 申告對象인지?

3. 回信內容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을 包含한 單位工程 全體를 새로이 設置할 境遇에는 排出施設 設置許可對象이다.

4. 理由

既 許可된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工程 全體를 代替한다함은 許可받은 事項의 變更으로 볼 수 없으며, 既 許可된 施設을 閉鎖하고 새로운 排出施設을 設置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5 條, 同法 施行規則 第 17 條 및 第 18 條

다. 許可받은 施設以外의 施設 增設時 變更許可對象 該當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計劃 31602-1554('87.8.25)

回信 :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가스粒子狀物質 및 惡臭排出施設中 排出施設 變更許可對象 施設 1 號乃至 8 號에 該當되는 施設로서 既 許可된 事業者가 生活炭製造施設, 가죽·아교 및 젤라틴製造施設, 窯業製品施設 및 천백질제조시설등 變更許可對象 以外의 다른 施設을 增設한 境遇 變更許可 對象인지? 變更申告 對象인지?

3. 回信內容

排出施設 設置許可 對象이다.

4. 理由

排出施設 設置許可는 排出施設에 對한 對物的 許可이므로 許可받은 排出施設과 다른 種類의 別個 工程의 排出施設을 設置하는 것은 許可받은 排出施設의 變更이 아니라 新規 排出施設의 設置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5 條, 同法 施行規則 第 17 條 및 第 18 條

라. 住居地域에서의 排出施設 變更許可 可能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計劃 31602-2346('87.10.21)

回信 : 大管 31720-11713('87.12.8)

2. 質疑內容

1972.7.5 準工業地域에서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아 (보이러·프레스施設等) 操業中인 事業場이 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된 後 既 設置된 납땜 및 납땜鍍金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特定有害物質이 含有되어 있음이 發見되어 1987.9.9 排出施設 變更許可 申請을 한 境遇 許可可能與否?

3. 回信內容

變更許可가 可能하다.

4. 理由

汚染物質排出量이 極微量이기 때문에 特定有害物質 排出施設에 該當되지 않는 것으로 判斷하여 이제까지 規制하지 않았던 既存 施設이라는 點, 72 年度 工場施設以後 用途地域의 變更과 數次 關係法令의 改正이 있었으나, 既存 施設로서의 既得權을 認定받아 왔다는 點, 排出施設設置(變更)許可와 關聯하여 他法에 抵觸되지 않는다는 江西區廳長의 意見等을 考慮할 때 變更許可가 可能하다고 判斷된다.

5. 參照條文

가. 事業場 現況

○ 工場設置年度 및 生産製品 : 1966 年, 半導體 集約回路

○ 最初 排出施設 許可年度 : 1972.7.5 日

○ 所在地域：최초 許可當時 準工業地域에서 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1975)

나. 變更許可 申請經緯

年度	主要事項	主要施設
1972.7.5	最初 排出施設 設置許可(準工業地域)	보이라, 프레스施設
1975	變更許可(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	壓縮機 新設
1977	變更許可(住居地域)	酸處理施設 新設, 보이라 增設
1980	變更許可(住居地域)	廢가스 및 粉塵 洗淨 施設 新設
1983	變更許可(住居地域)	프레스施設 一部 廢棄
1986	變更許可(住居地域)	보이라는 排出施設에서 除外
1987.9.9	排出施設 變更許可 申請書 提出 (住居地域)	無許可施設인 既存 鍍金施設, 세척시설에 對해 變更許可 申請

다. 變更許可 對象施設

- 水 質：－ 廢가스 粉塵 洗淨施設 增設
－ 鍍金施設, 세척시설 新設

○ 騒音·振動：壓縮機, 프레스增設 및 送風機等 新設

라. 變更許可 申請事由

○ 납땜 및 납땜 鍍金施設을 工場 가동 이래 繼續 使用하였으나 排出汚染物質(납과 구리)이 極微量이라 特定有害物質 排出施設에 該當되지 않는 것으로 判斷하여 許可를 得하지 않고 使用, 無許可로 告發을 당하자 許可申請 (이 工程에서 發生하는 廢水 및 廢가스 處理施設에 對해서만 許可를 得함)

○ 他法 抵觸與否에 對한 江西區廳長 意見： 排出施設 設置(變更) 許可關聯, 他法에 抵觸 되지 않음.

마. 工業團地管理法上的 工業團地안에서의 排出 施設 變更許可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서울計劃 31720-3213('87.12.18)

回信：大管 31720-509('88.1.19)

2. 質疑內容

工業團地管理法의 適用對象인 工業團地안의 工場인 境遇 特定有害物質 排出施設 變更許可를 할 수 있는지 與否

(工業配置法 施行令 第19條에의 抵觸與否)

3. 回信內容

變更許可가 可能하다.

4. 理由

移轉促進地域에 該當되고, 工業團地管理法 適用對象인 工業團地內 工場인 境遇 工業增設이 可能할 뿐 아니라 同規定은 工場을 直接規制 對象으로 하는 것으로 工場內의 排出施設은 이에 關係없이 許可가 可能하기 때문임.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5條, 同法 施行令 第16條 및 第16條의 3, 工業配置法 施行令 第19條

마. 建築物의 變更없이 排出施設을 變更하는 境遇 許可可能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서울計劃 31720-3213('87.12.18)

回信：大管 31720-509('87.12.18)

2. 質疑內容

이미 建築된 建築物의 變更없이 建築物內의 排出施設을 變更하는 境遇 特定有害物質 排出施設도 變更許可를 할 수 있는지 與否?

(建築法施行令 第66條第2項第5號에의 抵觸 與否)

3. 回信內容

變更許可할 수 있다.

4. 理由

既存 工場內의 施設을 增設함에 있어 建築法 第2條 第12號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의 新築, 增築, 改築, 再築, 移轉을 수반하지 않는 境遇에 는 建築法上 建築에 該當되지 않는 것이며, 準工業地域內에서 工場의 建築當時 建築法令에 適合하게 建築한 工場에 建築法上 建築行爲가 없이 工場內의 施設을 增設하는 것은 建築法施行令 第66條 第2項 第5號에 違反事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임.

6.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 既 許可받은 施設一部를 他人에게 讓渡한 境遇 變更許可 對象 해당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光州 計劃 31720-1882('87.12.31)

回信 : 大管 31720-303('88.1.13)

2. 質疑內容

既 許可받은 施設中 一部를 施設의 變更없이 他人에게 讓渡한 境遇 變更許可 對象인지, 變更申告 對象인지의 與否?

3. 回信內容

變更申告 對象이다.

4. 理由

適法하게 許可를 받아 정상가동중인 排出施設의 一部를 許可받은 施設의 變更 또는 所在地 變更없이 他人에게 讓渡한 境遇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할 重要事項에 該當되지 아니하고 所有權者의 變動에 따른 單純한 許可證上의 排出施設을 分離하는 것에 不過하므로 變更申告로 處理하여야 함.

5. 參照條文

環境保全施行規則 第17條 및 第18條

나. 防止施設만 變更할 境遇의 變更許可對象 該當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計劃 31602-1554('87.8.25)

回信 :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排出施設의 變更없이 防止施設만 變更할 境遇 變更許可 對象인지? 變更申告 對象인지?

3. 回信內容

變更申告對象이다.

4. 理由

排出施設 設置許可時 防止施設 設置內譯書等を 添附하도록 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排出許容基準以下로 處理할 수 있는지 與否등을 判斷하여 同 施設의 設計許可를 하게 되므로 防止施設도 許可받은 事項中 重要事項(排出施設變更

許可對象施設)에는 包含되지 않았으므로 變更申告 對象施設로 보아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5條第2項, 同法 施行規則 第17條 및 第18條

다. 한개의 事業場이 둘 以上으로 分割될 境遇 排出施設 設置許可 分割方法과 둘 以上の 事業場이 하나로 統合될 境遇 排出施設 設置許可 統合方法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환안 第2號('87.11.25)

回信 : 大管 01254-11714('87.12.8)

2. 質疑內容

工業團地內에 A 라는 商號의 株式會社 工場이 있다. 이 工場은 第1工場과 第2工場이 있고, 第1工場과 第2工場間의 距離는 約 2km距離에 있다. 第1工場과 第2工場의 事業主는 同一人이나 第1, 2工場은 各各 別個의 事業者 登錄이 되어 있다. 이중 第2工場은 셋으로 分離되어 그중 둘은 各各 다른 事業主에 의하여 B와 C라는 새로운 會社로 發足, 分離되었고 하나는 既存 A 商號 會社의 第1工場에서 管理 運營하도록 되었다. 위의 第1, 2工場은 이미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得한 工場이다. 그러나 第2工場內에서 두개의 獨立會社가 設立됨으로써 排出施設 許可內容 역시 셋으로 分離시켜 各各 該當施設 所有會社의 許可證에 整理해야 할 必要가 있게 되었는 바, 이때

① 하나의 事業場이 3개의 獨立된 會社로 分割되어 排出施設들도 3개會社로 分割되어야 하는 바, 이 境遇의 排出施設變更은 變更許可에 該當되는지 또는 變更申告에 該當되는지?

② 變更許可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할 者는 讓渡者인 A社인지, 讓受者인 B와 C會社인지?

③ 3분된 第2工場의 排出施設中 A社 管割 殘餘施設(第1工場施設의 20%이상 該當)을 第1工場의 增設로 보아 變更許可를 申請할 수 있는지? 또한 이때 第1工場 및 第2工場 一部로 된 許可證을 하나로 統合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① 第1工場의 排出施設의 一部를 讓渡하는 境遇 讓渡되지 않은 殘餘施設에 對하여는 環境保全

法施行規則 第 18 條의 規定에 依據 變更申告 處理하여야 하며,

② 排出施設에 對한 許可權이 隨伴되는 讓渡 施設에 對하여는 讓渡하는 者가 排出施設 設置許可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排出施設 變更許可對象施設中 廢水排出施設의 既 許可된 施設보다 20%以上 增設이란 單位 防止 施設別로 이에 속하는 排出施設 容量의

20%以上을 말하며, 第 2 工場의 讓渡되지 않은 殘餘施設의 施設物 自體에는 全히 增設이 없이 2 個의 許可證을 하나로 吸收, 統合하는 境遇에는 增設에 該當되지 않으므로 變更申告로 處理하여야 하나, 第 1 工場과 第 2 工場의 所在地가 다른 境遇에는 2 個의 許可證을 하나로 統合할 수 없다.

< 다음호에 계속 >

정 / 화 / 칼 / 럽

신뢰하는 사회, 믿음이 서는 정치

사회정화위원회 제공

한농부가 양파를 심어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농부가 너도나도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풍작을 이루고도 양파농사는 생산비도 못 건졌읍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소를 기른 사람들이 소값이 개값이 되었다고 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추값이 한 때는 「금값」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듬 해에는 배추가 뽕혀 나가지도 못한 채 밭에서 그대로 썩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증권바람이 불어 가정주부들이 아예 하루종일 재정에 나앉아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가에 신바람이 났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부들은 이번에는 논 밭 다 팔고 용자넌 농자금까지 보태 증권시장으로 진

출했습니다. 어부들은 뒤질세라 배팔고 어구(漁具) 팔아 증권시장으로 뛰어갔읍니다. 그러나 아빨사 하필이면 이 나라의 농어민들이 「막차탄 손님」, 「상투잡힌 손님」이 될 줄이야,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정치하는 사람들은 「허허 사람은 맘을 비워야 한다니까」라고 점잖게 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닦고봐도 맘비운 정치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맘을 비우기는 커녕 허욕만 가득 채워서 허튼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간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선진사회가 될 것처럼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하루아침에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건 아닙니다. 원탁으로 정부의 모양새를 고쳤다고 해서 역시 하루 아침에 권위주의가 청산되는건 아닐 것입니다. 88 올림픽을 치른다고 해서 당장 선진된 질서가 뿌리내리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요는 사람의 맘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信)을 생각하고 참음(忍)을 생각해야 할 때라하 여겨집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조급합니다. 결과나 목표만 중시할 줄 알았지 소중한 중간과정을 항상 생략하는 속성을 지녀 왔읍니다. 그러니 언제 정의사회, 신의사회가 구현되었을 까.

이제부터는 너와 나만의사회가 아니라 나와 너를 하나로 조화시킨 「우리」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가 숨쉬는 사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믿음이 서는 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화운동도 바로 자정(自淨) 기능의 자기화(自己化)에서 비롯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